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3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오세희 · 서삼석
허종식 · 위성곤 · 김한규
이해식 · 김남근 · 서영석
이재관 · 한준호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등).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성능검사 등)”을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와”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u>때와</u>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u>산업통상부장관의</u> 검사를 <u>받아야 하고</u> ,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 ----- ----- <u>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u> 완성검사를 <u>받아야 하고</u> ----- <u>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u> -----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 설></u> 5. <u>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u> 6. ~ 7. (생략) <u><신 설></u> 8. (생략)	제25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9조를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u> <u><삭 제></u> 6. ~ 7. (현행과 같음) 7의2. <u>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u> 8.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③ (생략)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u>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